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발의자 :

제안이유

서남권등 낙후지역은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소외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 및 생활기반이 열악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그동안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소규모 분산투자 위주의 개별적, 단편적 접근에 따라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자생적 발전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낙후지역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과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발전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인접지역과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개발하여 낙후지역을 새로운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서남권은 현재 지역발전기반이 가장 취약하나, 무안

국제공항, 호남고속철도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있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조선산업, 식품산업 등 특성화된 지역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과 가까운 지정학적 여건상 대중국 교역의 거점화에 유리한 점 등 높은 발전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남권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신안군과 그 인접지역을 서남권종합발전구역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낙후지역 중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직접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낙후지역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함(안 제5조)
-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낙후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구역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함(안 제8조)
- 다. 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면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산업단지 지정, 관광단지 지정, 유통단지의 지정 등을 의제함(안 제10조)
- 라.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4조)

- 마. 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과 동시에 건축허가·신고,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을 의제함(안 제15조)
- 바.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 및 입주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낙후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함(안 제21조)
- 사. 낙후지역의 발전과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낙후지역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낙후지역발전기획단을 둠(안 제22조, 제26조)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제29조)
- 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용지매입비의 용자 등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제31조)
-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법인 설립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공기업의 출자제한을 완화함(안 제36조)
- 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은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정주환경개선을 위해 교육·문화·관광시설 등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제40조)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낙후지역”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의 낙후지역을 말한다.
2. “낙후지역종합발전구역”이라 함은 낙후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낙후지역종합발전계획”이라 함은 낙후지역종합발전구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4. “낙후지역발전촉진지구”라 함은 낙후지역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5. “낙후지역투자촉진지구”라 함은 낙후지역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이 법은 낙후지역종합발전구역에 적용되

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에 의한 낙후지역종합발전계획은 낙후지역종합발전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낙후지역 발전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낙후지역 발전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제5조(낙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등) ①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신안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은 서남권낙후지역종합발전구역(이하 “서남권종합발전구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서남권종합발전구역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낙후지역종합발전구역(이하 “종합발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남권종합발전구역이 지정된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낙후지역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에 따른 낙후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서남권종합발전구역이 지정된 경우 및 제2항

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지사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발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목적
3. 종합발전구역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4.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7.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8.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종합발전구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발전구역의 지정 요건) 건설교통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낙후지역 및 그 인접지역(종합발전구역 면적 중 인접지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일 것

2. 낙후지역 중에서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관광, 지역 특화산업 등 발전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일 것

제7조(종합발전구역의 지정해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종합발전구역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후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조제7항은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도 적용한다.

제3장 낙후지역발전촉진지구 지정 등

제8조(낙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직접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낙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발전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발전촉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발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발전촉진지구를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5. 투자 및 지원계획
6. 환경보전계획
7.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1.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2. 발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도지사 및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자연공원법」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낙후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제1항·제2항 및 제4항은 발전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를 지정·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발전촉진지구의 지정제안) ①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자는 제8조제2항의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발전촉진지구 지정 등에 의한 의제) 제8조에 따라 발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승인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수립·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유통단지의 지정
6.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시·군 지역에서 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촉진지구 외의 지역

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변경,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1.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제11조(발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발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때

3. 발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조 각 호에 따른 지정·수립·승인·변경·결정 및 제15조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촉진지구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제8조에 따라 지정된 발전촉진지구 안에서 건축

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발전촉진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업시행자) ①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지정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기업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5. 민간기업(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지역개발법인

②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기간, 목적 및 위치·면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7.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지사는 실시계획이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또는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도지사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의 승인과 동시에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5. 「관광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0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10.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11.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2.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3.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다만, 유선장·탐방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26.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협의

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0.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사용의 심사
3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2.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유지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가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제16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제8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한 때(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개발 계획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이주대책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①발전촉진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발전촉진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준공검사 등) ①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외의 국가기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할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①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대·매각하는 조성토지의 용도, 임대·매각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공시설의 귀속) 사업시행자가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21조(낙후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 및 입주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낙후지역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가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투자촉진지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촉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및 시행기간
3. 투자 대상, 기업투자 유치 및 지원계획
4. 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제9조 및 제11조는 투자촉진지구의 지정·변경, 지정제안 및 해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장 낙후지역발전위원회 등

제22조(낙후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낙후지역의 발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낙후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종합발전구역의 개발사업과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개발사업 시행과 투자촉진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낙후지역의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제24조 (위원회의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정부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및 해당 도지사
2. 민간위원 : 낙후지역의 발전과 투자촉진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낙후지역발전기획단) ①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낙후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②낙후지역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발전계획 등 종합발전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기획
2. 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3. 그 밖에 종합발전구역의 발전과 투자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낙후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낙후지역발전기획단은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하여 종합발전구역의 투자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기구) 도지사는 종합발전구역의 발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제5장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28조(조세의 감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

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임대료 감면 등을 위한 자금지원) ①국가 및 지자체는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용지대입비의 용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및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게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지방채 발행의 특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채의 종류·발행한도·발행방법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채무 보증) ①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과 금융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 금융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를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예산의 우선편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과 투자촉진지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우선 편성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규모, 보조비율 등에 있어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사업목적이 동일한 유사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기반시설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원활한 개발사업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과 투자촉진지구 투자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

는 기업에게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주기업이 해당 국·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제25조의2(제3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제36조(지역개발법인 설립의 활성화)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개발법인 설립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개발법인에 출자하는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은행법」 제37조, 「보험업법」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30퍼센트까지 보유하게 할 수 있다.

②지역개발법인 설립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법인에 대하여 20퍼센트 이상 출자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우선지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발전촉진지구의 일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출자총액제한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9조(지역주민 우선고용) 발전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과 투자촉진지구의 입주기업은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종합발전구역내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제40조(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각급학교·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구역 내에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종합발전구역내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제41조(학교·의료시설 설치에 대한 특례) ①발전촉진지구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5조를 준용한다.

②발전촉진지구 안에서 종합발전구역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및 교육과정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③발전촉진지구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7조를 준용한다.

제42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원 및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 하거나 새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의사·간호사 및 그 밖의 종사자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종합발전구역 내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의료기관의 교원·의사·간호사 및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43조(기초조사) ①국가,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8조에 따른 발전촉진지구의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또는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해 인

구·경제·토지이용·건축물·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려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국가,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43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또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같은 법 제131조,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4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과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종합발전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과 도지사는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6조(감독) ①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 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얻도록 제9조에 따라 제안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4.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6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00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00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 제10조	낙후지역 발전촉진지구
-----	------------------------------	-------------

종합발전구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가. 낙후지역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낙후지역발전기획단을 둠(안 제28조)
- 나. 서남권종합발전구역에서 종합발전계획으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서남권 발전사업을 위해 국가·지자체의 자금지원 및 민자 유치
- 다. 다른 종합발전구역의 발전사업 및 인프라사업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중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2. 비용추계 결과

- 2007년~2020년(14년) : 총 72,280억원 소요
 - 정부 6,280억원, 민간 66,000억원
 - 연간 평균 재정소요 : 449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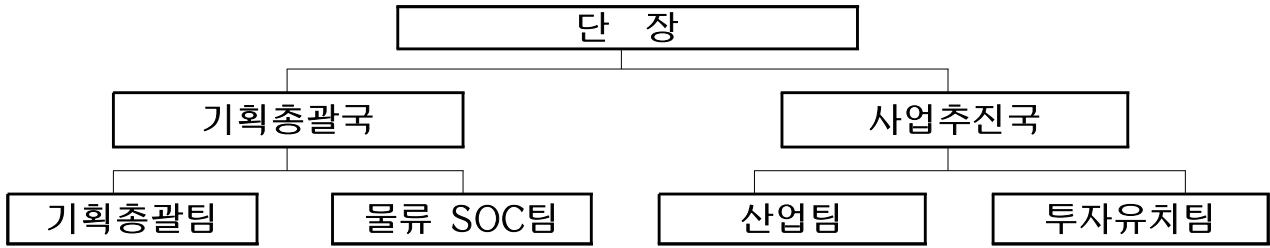
(단위: 억원)

항 목	금 액	비 고
낙후지역발전기획단	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장, 2국 4팀 경상예산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서남권 발전사업	72,000 (민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사업 : 물류, 지역특화, 신재생에너지, 관광레저사업 -농산물 물류유통 시범단지, 조선산업 혁신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 등
합 계	72,280	

3. 참고자료

- 가. 낙후지역발전기획단
 - 소 속: 건설교통부장관

○ 조 직: 1단장, 2국 4팀



○ 인 원: 20명 정도

○ 업 무

- 종합발전계획 등 종합발전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 계획
- 종합발전구역지역 내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 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 및 보좌
- 그 밖에 종합발전구역지역의 발전과 투자촉진에 필요한 사항

* 서남권 인프라사업(기 추진이 결정된 사항으로 재정 추가소요가 없음)

구분	기반조성단계('07-'09)	투자유인단계('10-'13)	투자활성화단계('14-'20)
공항/항만	▪ 무안국제공항	▪ 목포 신외항 ▪ 목포항 확장	
철도			▪ 목포-보성간 철도 ▪ 호남고속철도
고속도로	▪ 무안-광주 고속도로	▪ 목포-광양 고속도로	
산업단지	▪ 대불자유무역지역 조성		
도로/교량	▪ 흑산도 일주도로 확·포장	▪ 연도교(증도-사육도) ▪ 목포대교	▪ 압해-운남 국도77호선 ▪ 지도-임자 국도24호선
기타	▪ 전남경찰청 이전 ▪ 신안군 식수원 개발사업	▪ 해양경찰청 서해청사 신축	
투자예산	3.0조(재정)	10.5조(재정)	8.3조(재정)
소요예산합계	15.2조원		

4. 작성자

작성 자	
연 락 처	